의안번호	2216703
의 뢰 인	김영배의원
회 답 일	2026.7.3
추계번호	26D079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검찰청의 위치와 관할구역)	대검찰청의 소재지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 정함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조(검찰청의 위치와 관할구역)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대검찰청 소재지 변경(안 제3조)

○ 개정안은 대검찰청의 위치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다만,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 어느 지역으로 소재지가 결정될지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문제로 사전에 합리적인 예측이 어려움. 또한 청사 확보 방식(청사 신축 또는 기존 국가시설 활용 여부) 및 청사의 규모 등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건축공사비 등 이전비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 토지매입비 및 건축공사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특정되어야 하며, 새로이 건립될 대검찰청 청사의 대지면적 및 건물연면적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데, 현재 이전 지역 및 청사 면적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현 시점에서 이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

- 또한, 기관 이전비 및 직원 정주비용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대검찰청의 이전 규모, 이사 직원 수 및 1인당 평균 이사비용[1]에 대한 추정이 필요한데, 2026년 10월 시행될 「공소청법」에 따른 검찰 조직 개편에 따라 현 시점에서 이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 당시 소요된 이전 비용 단가는 다음의 표와 같음

[표] 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 비용 단가 (2019년)

구분		비용
기관 이전비	기관이사비	이전 직원 1인당 평균 281만원
	설치·공사비	이전 직원 1인당 평균 559만원
직원 정주비용	이사지원비	이사 직원 1인당 평균 142만원
	이주지원비	이전 직원 1인당 월 20만원(2년간 지급)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광근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광근	02-6788-4831	kklee@assembly.go.kr

1)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5] 이전비 지급 기준표

구분	지급 기준	지급액
국내 이전비	1. 5톤 이하의 이사화물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2.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한다)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